



## < 수시 공시 >

2012.7.3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 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# 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가. 발생 일자 : 2012.7.27(금)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가격
1	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A형	1,545,323,933	1,508,619,996	976.25
2	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C형	1,199,282,522	1,166,667,020	972.80
3	신영코리아밸류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2,759,741,050	2,701,076,117	978.74

나. 발생 일자 : 2012.7.28(토)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가격
1	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948,022,343	940,703,895	992.28
2	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9호(채권혼합)	2,448,118,830	2,462,435,594	1005.85

### 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 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